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89

발의연월일: 2021. 5. 13.

발 의 자: 박홍근 · 이탄희 · 이상직

이원택 · 양경숙 · 김경만

전혜숙 · 양정숙 · 송갑석

김민석 • 이용우 • 아주진비

홍성국 · 앙이원영 · 윤미향

황운하 · 김영배 · 이성만

남인순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함.

이에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 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 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성실하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온 채무자가 향후 상당기간 학자금대출을 계속 상환해야하고, 그 경우 생계지속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66조제9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제9호 중 "원리금"을 "원리금."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 생계비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제5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	제566조(면책의 효력)
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	9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	
자금대출 <u>원리금</u> <단서 신	<u>원리금.</u> <u>다만, 소득,</u>
<u>설></u>	생계비 및 취업 후 상환 학자
	금대출 원리금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u>지 아니하다.</u>